

의안번호	제51호
의결연월일	2022. 4. 21.

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4월 13일,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4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22년 4월 21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 제55조에 담배소비세를 조례로 규정할 위임 근거가 없어 담배소비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」 조항 삭제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